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, “합격증서교부연명부”를 “합격증서교부대장”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(併記)하는 등의 방법으로 「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」 등 7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. 14. ~ 5. 24.)

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)”를“(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”를 “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”로 한다.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“합격증서교부연명부”를 “합격증서교부대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)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제1호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3조(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2항제1호 나목1)(마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마) 콜론(call loan: 초단기 자금 대여)

제4조(「보험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실지조사”를 “실제 조사”로 한다.

제5조(「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1항제2호가목3) 및 5)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) 내국수입 유전스(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)

5) 콜론(call loan: 초단기 자금 대여)

제6조(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」의 개정)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권종”을 “종류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권종”을 “종류”로 한다.

제7조(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출연하여야”를 “출연해야”로, “안분한”을 “나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<u>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</u>)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<u>합격증서교부연명부</u> 에 기재하여야 한다.	제4조(<u>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</u> -----.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기획행정실) ① (생략)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(생략) 2.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·관리 업무의 <u>통할</u> ·조정 3. ~ 26. (생략)	제12조(기획행정실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총괄</u> ----- 3. ~ 26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심사분석실) ①·② (생략)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심사분석제공업무를 <u>통할</u> ·조정 2. ~ 11. (생략)	제14조(심사분석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----- <u>총괄</u> ----- ----- 2. ~ 11. (현행과 같음)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금융기관의 기금출연) ① (생략) ②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(이하 “출연기준대출금”이라 한다)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: 가목의 대출금에서 나목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20 가. (생략) 나.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)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) ~ 라) (생략) 마) 콜론(Call Loan)	제1조의2(금융기관의 기금출연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1) ----- ----- ----- 가) ~ 라) (현행과 같음) 마) 콜론(call loan)

	<u>초단기 자금 대</u>
	<u>여)</u>
바) ~ 거) (생 략)	바) ~ 거) (현행과
	같음)
2) ~ 10) (생 략)	2) ~ 10)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예비허가의 기준 등) ① (생략)	제10조(예비허가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신청내용의 확인,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<u>실지조사</u> 를 실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제 조사</u>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대비표

– 9 –

<u>5) 콜론</u> 6) ~ 13) (생략) 나. ~ 커. (생략) ② (생략)	<u>5) 콜론(call loan: 초단기 자금 대여)</u> 6) ~ 13) (현행과 같음) 나. ~ 커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협회비의 산정기준) ① (생략)	제3조(협회비의 산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(원수보험료·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·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)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.	② ----- ----- 출연해야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나눈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